

「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 공고

2021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「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 (중소·중견기업 대상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. 2. 26.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1. 목적

□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

* (추진근거)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(금융상·세제상의 지원)

2. 신청 자격

□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
* 중소기업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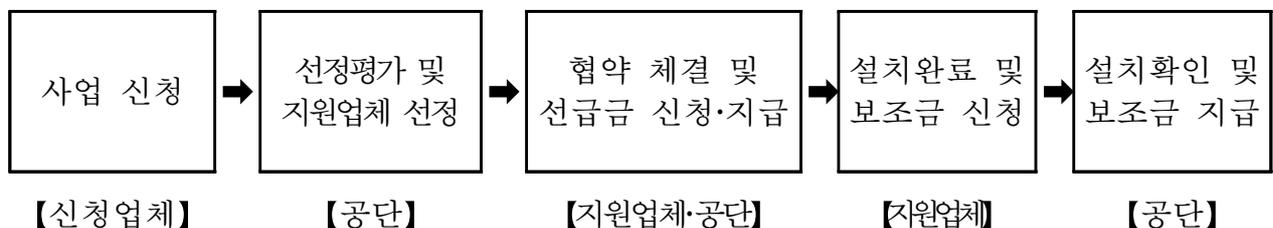
**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

※ '22년 사업에 대기업 지원여부 대한 예산 반영 협의중

3. 지원 내용

- 사업 기간 : 협약일 ~ 사업종료일
- 지원 규모 : 총 135억원
- 지원 설비 : 운영지침 [부록 1]에 따른 감축설비
- 금액 및 한도 : 설비 투자비의 50% 이내, 사업장별 연간 최대 30억원 이하
 - ※ 다년도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은 선정된 보조금 전체금액을 연도별로 균등하게(연간 최대 30억원) 나누어 지급
- 지원 대상 : 투자회수기간* 3년 이상 10년 미만이며, 설비투자비가 6억원 이상인 사업(보조금 기준 3억원 이상)
 - *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32,013원, 에너지 단가는 신청업체의 직전년도 평균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출
- 지원 범위 : 해당 시설(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)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, 컨설팅비*에 한함(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,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)
 - * 감축설비 도입·설치 관리, 감축실적 산정,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

4. 지원 절차



5. 지원대상 선정

- (평가기준) 지침 [부록2]에 따라 사업계획(40점), 사업효과(40점), 신청조건(20점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·선정
- (평가방법)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평가(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)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(사업장) 중 선정
 - ※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지원
 - ※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음

6.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

- (처분제한)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
- (실적보고)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(3년) 동안 지원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

7. 신청 방법

- 접수기간 : 2021.2.26. ~ 2021.3.24,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'e나라도움'에서 신청서를 작성, 제출 서류 첨부
 - ※ 본 지원사업의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회원가입 필수

☞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신청관리 → ⑤ 공모현황 → ⑥ 공모명 : '2021년 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'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제출서류(지침 별지 제1~3호 , 제29호 서식)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- 정보활용 동의서
 -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자료
 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
 -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

○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은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, 설비 단위로 신청·관리

<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설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>

1. 동일 사업장 동일 유형 설비: 단일 사업계획서 제출
2. 동일 사업장 다른 유형 설비: 설비별 사업 계획서 제출
3. 다른 사업장 동일 유형 설비: 사업장별 사업 계획서 제출

-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
-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, 사업비, 감축량 산정방법 적절성,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

□ 문의처

- 사업문의 : 032-590-5616 ~ 5618(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)
- e나라도움 사용문의(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) : 1670-9595

8. 기타사항

-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
- 기타 사항은 「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을 따름
-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 기업에게 있음
- 지원업체, 설비 제조업체,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,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[붙임1] 지원사업 세부 절차

□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

- 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공단과 협약 체결

□ 착수신고

- 지원업체는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
-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전에 공단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
 - ※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업체 등과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
- 지원업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
※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
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

-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, 연구결과와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2.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3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
-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1.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)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3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4.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제22조(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)

-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단,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, 전문공사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.
 - 1.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
 - 2. 공사계약 체결
 - 3.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,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해외 공사,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,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,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
 - 2. 중앙관서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·감독(기획, 설계 등)하는 사업,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.
 - 3.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□ 보조금(선급금) 지급

- 착수신고서 제출 후, 지원업체는 보조금의 70% 이내에서 선급금 신청이 가능
- 선급금 수령을 위해서는 보조금(선급금)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,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이하 'e나라도움'이라 함)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·제출

※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(선급금 신청 시)

-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교부관리 → ⑤ 교부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지원업체는 보조금이 입금되면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
□ 상황보고

-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
- 상황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
□ 계획변경 보고

- 지원업체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
 -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 변경(30%이상)
 -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내용(설비내역, 설치소재지, 시공업체, 사업기간 등) 변경
 -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

□ 설치완료 및 보조금(잔금) 신청

-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,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
- 지원업체는 보조금(잔금)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·제출

※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(잔금 신청 시)

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교부관리 → ⑤ 교부신청 →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공단은 보조금(잔금)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, 설비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
-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

□ 사업비 정산

- 지원업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
 - ※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‘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(기획재정부공고 제2017-186호)’의 [별표1]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
- 공단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
-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(보조금 입·출금계좌)로 반납하여야 함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업체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12조 3에 따라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□ 정보공시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e나라도움에 공시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있을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46조에 따라 중요재산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

□ 사후관리

-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·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지원업체는 [별지 제20호서식]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
- 사업종료 후 차년도 부터 3년간, [별지 제22호서식]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

[붙임2] 지원설비 목록

지 원 설 비	지 원 범 위
1. 탄소무배출설비	<p>○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- 신재생에너지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</p> <p>▶ 신에너지시설 : 수소보일러, 수소 정제 시설, 바이오가스 개질시설, 연료전지 등 ▶ 재생에너지 시설 : 태양에너지, 풍력, 바이오에너지* 등</p> <p>* 바이오에너지는 성상이 다양하여(폐목재, 하수슬러지, 해조류 등) 온실가스 배출량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인 바, 추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검토 예정</p>
2. 폐열회수 이용설비	<p>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- 건조배열, 보일러배열, 냉각열 등</p>
3. 폐기물 열분해시설	<p>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(가스, 유류)하기 위한 설비</p>
4. 탄소포집기술	<p>온실가스를 포집·이용하는 설비</p>
5. 차압터빈 시스템	<p>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- 스팀터빈발전, 차압구동 장치 등</p>
6. 연료 전환	<p>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- 보일러, 건조설비, 버너, 로 등</p>
7. 폐기물전처리장치	<p>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- 파쇄기, 선별기 등</p>
8. 인버터	<p>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</p>
9.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	<p>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</p>
10. 고효율 기기	<p>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- LED조명, 모터, Pump, Fan, 교반기, 변압기, 버너 등</p>
11. 에너지관리시스템	<p>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, 제어장비,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</p>
12. 공정개선	<p>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-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</p>
13. 기타	<p>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</p>

※ 지원설비 중 발전 설비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우선적으로 소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, 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(발전량, 구매량, 판매량 등)를 제출하여야 함